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5. 9. 1.
북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5.8.21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5.8.25.
- 다. 상정일자 : 제19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15.9.1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교육청소년과장 김 정 일

가. 제안이유

장학사업의 대상을 확대하여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
일부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장학사업 대상 확대(안 제2조제2호, 안 제6조제1항제4호 신설)
 - 기존 중·고등·대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장학사업 대상 확대
- 2)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정비 등 조례
문구 정비

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- 본 조례안은 안 제2조제2호의 학교의 범위에 초등학교를 포함하고, 안 제6조 제1항에 예술·체육 그 밖의 기능에 재능이 있는 초등학교의 재학생으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도 장학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장학사업의 대상을 확대하여 재능 있는 인재 발굴 및 육성이라는 장학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